



옥 천 군

선 람	기관의 장



제1205호 2021. 3. 17.(수)

**【조 례】**

- 옥천군조례 제2953호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옥천군조례 제2954호 옥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 .....6
- 옥천군조례 제2955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옥천군조례 제2956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 옥천군조례 제2957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0
- 옥천군조례 제2958호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36
- 옥천군조례 제2959호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42

회 람									
--------	--	--	--	--	--	--	--	--	--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3호

###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향군인회”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을 “지역안보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협력)”을 “(군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를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등의 공익사업
6. 지역사회 기초질서 계도 사업
7.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 지역안보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옥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현행과 같음)</p> <p>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 ----- ----- -----.</p>
<p>제3조(협력)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 ----- ----- ----- -----.</p>
<p>제4조(예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p>	<p>제4조(예우) ----- ----- -----</p>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재향군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설>

<신설>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제5조(예산지원) -----  
-----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 -----  
-----  
-----.

제6조(지원대상 사업) -----  
-----  
-----.

1. ~ 4. (현행과 같음)

5.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등의 공익사업

6. 지역사회 기초질서 계도 사업

7.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  
--

제7조(준용) -----  
-----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p><u>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u>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u>관리 조례」에 따른다.</u></p> <p><u>&lt;삭 제&gt;</u></p>
---	--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4호

### 옥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옥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 총괄 현황 관리, 제도 운영 및 개선,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임원의 해임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

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군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총

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 평가는 총괄 부서의 장이 한다.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대행 사업 경비의 범위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③ 출자·출연 기관은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출자 기관의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 불능 등 기관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

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는 경영 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 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 위원회에 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 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 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 평가단은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 평가단의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 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 평가단 평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평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6조에 따른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 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 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치결과 보고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치요구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관계서류 제출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기록물 관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5호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얻어”를 “받아”로,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1.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에서 사

전에 교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p>	<p>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1명</u>----- ----- -----</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lt;단서 삭제&gt;</p>
<p>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외한다.</p> <p>1. ~ 7. (생략)</p>	<p>제8조(위원회 기능) ----- ----- <u>다만</u>----- ----- 1. ~ 7. (현행과 같음)</p>
<p>제18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사업자의 자금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p>	<p>제18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p> <p>4. ----- -----</p>

합)

5.·6. (생략)

② (생략)

제19조(교부결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 3. (생략)

4. 사업자의 자금부담액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생략)

②·③ (생략)

제20조(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한다.

한정함-----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교부결정 및 통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정함-----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조금 지급) -----

1.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6호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양성평등사업”이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지원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및 조례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6. 국고보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7.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8.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 9.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양성평등사업
3. 자활지원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 2 장 사회복지사업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사업
3.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복지시책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제7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 3 장 양성평등사업

제11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4.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여성단체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 4 장 자활지원사업

제13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5조제3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사업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사업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로서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이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로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로 제1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자금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창업자: 2천만원 이내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 1억원 이내
3. 자활사업실시기관: 2억원 이내

② 지원단위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제1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

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26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기금 대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여한 자활지원사업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출금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전출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7호

##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 2 장 노인복지사업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회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3. 전통문화 선양 사업
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사업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사업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8조(지원대상 등) ①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회로 한다.

② 노인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 3 장 장애인복지사업

제9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협의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및 사업의 지원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단체협의회로 한다.

② 장애인단체협의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 4 장 보 칙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8호

###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특별한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거수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등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보호)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군수는 소유자등에게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군수는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노거수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년)	가슴높이둘레 (cm)	비고
소 나무	150	240	주목과 나무는 이를 적용함
곰 솔	150	270	
은행 나무	150	300	
향 나무	150	130	
비자 나무	150	150	
가시 나무 (류)	100	230	
동백 나무	100	150	
느티 나무	200	360	
팽 나무	200	330	
푸조 나무	150	300	
서어나 나무	150	240	
이팝 나무	100	230	
말채 나무	100	230	
상수리 나무	100	240	
굴 참 나무	100	240	
배롱 나무	150	140	유실수는 이를 적용함
모과 나무	150	270	
감 나무	150	180	
음 나무	100	210	
회화 나무	150	230	
주엽 나무	100	210	버드나무류는 이를 적용함
뽕 나무	100	150	
왕 버 들	150	330	
벚 나무 (류)	100	240	
털 구슬 나무	100	210	
오동 나무	100	260	진달래는 이를 적용함
참죽 나무	100	180	
철 쪽	100~150	100~120	
만경수목(덩굴나무)	100~150	60~100	

- 비고. 1.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나무는 동일 성상(性狀), 과(科)·속(屬) 또는  
 성장속도가 유사한 나무의 종류에 따른다.  
 2.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기형목 등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3. 나무의 나이는 추정연도를 의미한다.

[별지 서식]

### 노거수 관리대장

지정번호 (관리번호)		지정 연월일		구분	
나무종류 (수종)		과명		학명	
소재지		지목		면적	
나무나이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 지름	수관폭
소유자	성명		관리자	성명	
	주소			주소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구분: 명목 · 보목 · 당산목 · 정자목 · 호안목 · 기형목 · 풍치목 등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2959호

###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사업가·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실천·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축산과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4.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감시 활동

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

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제12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홍보) 군수는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